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884
------------------	-----

제출일자 : 2013

제출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청의 조례제정 권고 및 산림보호법 제45조9규정에 의거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및 해제함으로써 취약지역에 예방시설 설치 등 집중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함

3. 주요내용

- 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사항 명시
(안 제1조, 제2조)
-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임기,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3조 ~ 제11조)
- 다. 위원회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부폐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2. 12. 31 ~ 2013. 1. 21(22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대구 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①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한다.
- ②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 되었을 경우에 해제한다.

제3조(구성)

-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와 서기 1명을 둔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사태관련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산사태관련업무 소관 과장, 재난관련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사람,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④ 위원회의 간사는 산사태관련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촉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그 밖의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상정안건 심의)

-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와 같이 의결한다.
 -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③ 위원회의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서무를 수행한다.
- ④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산림보호법 [법률 제11351호, 2012. 2. 22, 일부개정]**

제45조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58호, 2012. 8. 22, 일부개정]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하는 사람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